

의안번호	제 53 호
의 결 년 월 일	1995. / 2 . 26. (제 49 회)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년 월 일	1995. 12. 23.

기획실장 심사필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3
----------	----

제출년월일 : '95. 12. 23

제 출 자 : 보 은 군 수

□ 제안(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14,497호 : '94.12.31) 부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의 '96. 1. 1 부터 지방직화로 인한 정원조정과
-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인력 보강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함

□ 주요골자

- 양곡관리특별회계 공무원 지방직으로 전환 (4명)

행정주사	1명	⇒	지방행정주사	1명
농업주사보	1명	⇒	지방농업주사보	1명
행정서기	1명	⇒	지방행정서기	1명
기능10등급(사무보조)	1명	⇒	지방기능10등급(사무보조)	1명

- 군 본청(민방위 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 인력 보강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중원

※ 금회 정원조례 개정후 정원 현황

- 670명 (국가직 40명, 지방직 630명)

☐ 조례(안) : 붙임과 같음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과 같음

☐ 관계법령(근거)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 대통령령 제14,497호 : 1994. 12. 31 】

- 재난관리기구·정원 승인

【 지방 13330 - 1701 ('95. 12. 8) 】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제1호중 군 본청 「 216명 」을 「 221명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현행	개정(안)
제2조(정원의 총수) 보은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1. <u>군 본 청 : 216명</u>	1. <u>군 본 청 : 221명</u>
2. 의회사무과 : 11명	2. (현행과 같음)
3. 직속 기관 : 91명	3. (현행과 같음)
4. 사업소 : 13명	4. (현행과 같음)
5. 읍 · 면 : 294명	5. (현행과 같음)

人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は 應急患者의 발생현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交通警察公務員, 義護教師, 택시 및 事業用 버스를 運轉하는 運轉者들에게 救助 및 應急處置에 관한 敎育을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

마. 自然災害 또는 交通事故 등에 따른 大量患者發生에 대비하여 地方自治團體는 應急醫療 活用計劃을 수립하도록 하고, 평시에 이에 관한 訓練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令 第30條).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 영 삼 인

1994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 홍 구
국무위원 서 석 재
총무처장관

○대통령령 제14,497호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에 보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공무원 또는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공무원 및 지도공무원인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 및 도의 일반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는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직할시 및 도소속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령)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1) 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직무직 15인, 이사관 43인, 부이사관 35인, 서기관 123인으로 하고, 법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7월 1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의 직급별 정원은 이사관 15인, 부이사관 82인, 서기관 139인으로 한다.

(2)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일반행정공무원 정원 24인(서기관)과 지도공무원 정원 121인 (농촌지도관 9, 농촌지도사 90, 생활지도사 22)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시·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3)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시·도의 임업직(산림보호직류)공무원 정원 33인(8급 11, 9급 22)은 산림청으로 이체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5년 3월 31일까지 당해 시·도에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4) 특별시·직할시의 부시장 및 도의 부지사의 직급별 정원은 제2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6월 30일까지는 정무직 1인, 관리관 또는 이사관 14인(다만, 관리관의 정원은 6인을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제3조(지방공무원으로의 연차별 임용대상 정원 및 일정) 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할 국가공무원의 정원 및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일자	정원	직 급
일반행정공무원	계	1,007	
	1995.1.1	335	1급 1, 2·3급 1, 3급 2, 4급 73, 5급 238, 연구사 20
	1995.7.1	251	정무직 15, 2급 43, 3급 66, 4급 123
	1996.1.1	200	2·3급 3, 3급 2, 4급 60, 5급 135
	1997.1.1	221	2·3급 5, 3급 7, 4급 50, 5급 159
소방공무원	1995.1.1	1,068	소방감 1, 소방정 56, 소방원 48, 소방경 118, 소방위 191, 소방장 187, 소방교 120, 소방사 347
수의직공무원	1995.1.1	155	수의사 54, 수의사보 100, 수의원 1
임업직공무원	1995.1.1	455	임업사무관 2, 임업주사 83, 임업주사보 8, 임업사기 92, 임업사기보 245, 기능직 10등급(사무보조원) 20
양곡관리특별외계공무원	1996.1.1	979	서기관 1, 행정사무관 13, 행정주사 174, 농업주사 9, 행정주사보 139, 농업주사보 76, 행정사기 226, 농업사기 16, 행정사기보 81, 농업사기보 78, 기능직 8등급(전직) 6, 기능직 10등급 150(민간원 3, 준원 10, 사무보조원 109, 방조원 23)
지도공무원 및 연구공무원	1997.1.1	7,324	농업연구사 628, 농촌지도관 928, 농촌지도사 5,092, 생활지도사 700

충 청 북 도

우 (360-765) 청주시 문화동 89 / 전화 220 ~ 2225 / 전송 2229, 2239/담당 : 이용재

문서번호 지방 13330 - 1701
 시행일자 1995. 12. 8. ()
 (경유)

수신 더 (01 - 12)
 참조 시정.총무(내무)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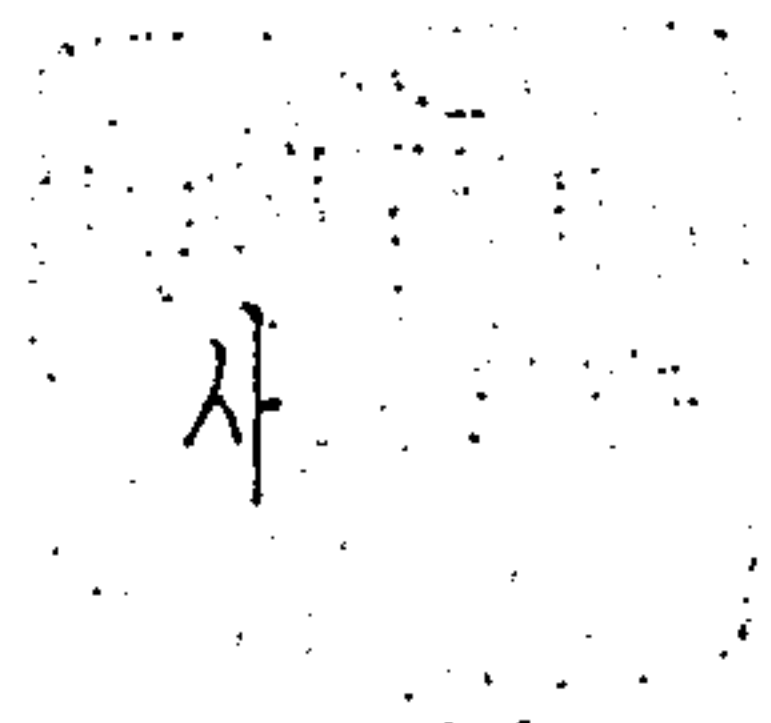
선결	순수	지	
접	일시	결	부
수	번호	재	가
처	리	공	계
담	당	람	계

제목 재난관리-기구.정원-승인-알림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재난관리 기구.정원이 승인되었기 알리니 관련 조례.규칙의 개정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기구.정원승인서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機構・定員承認書

2

기관명	직위	직급	정원	비고
제천시 (본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소계			0명	
청원군 (본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계			1명	
보은군 (본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계			1명	
옥천군 (본청)	민방위과장	지방행정사무관	△1명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1명	
	재난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토목주사	1명	
소계			1명	